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회장

1. 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증가로 센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명칭의 정의 및 책임에 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 나.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라.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 마.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3조)
- 바.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 2015년 본예산 군비 24백만원 예상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9. 5 ~ 2014. 9. 24)결과 : 특이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결과 : 해당없음(비행정규제)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붙임)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 5)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1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다문화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5.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과 생활안전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 포함)
2. 센터 아동의 급식비 및 급식인력
3. 그 밖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및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마련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모색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였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4. 작성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학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49			
정책명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명	강미나	전화번호	063-640-2130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생활복지과)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자녀교육과 안전 지도 등 여성, 특히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소통의 장이기도 함. ▪ 따라서 운영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 조부모 등의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수렴할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주민생활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정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음.			
<p>2014년 10월 22일</p> <p>기획감사실장</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관련(상위)법령발췌문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